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 삭제 및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시책 실시〉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02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 삭제	2
2. 부칙(경과조치)	6
3.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개선 및 발전 시책 실시	7
※ 참고자료	
1. 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 및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관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14.
3. 회부연월일 : 2025.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모두 소상공인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 및 자산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적절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또한,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상시 근로자 수 확인에도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더 작은 소상공인인 영세소상공

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 삭제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u>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 <u>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u> -----.
1. <u>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u>	<삭 제>
2. <u>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u>	<삭 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	② (현행과 같음)

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현행법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小企業)¹⁾ 중 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②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²⁾를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 ④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

(참고자료1).

상시 근로자 수 요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매출액 증가에 따라 소기업·중기업으로 성장해 가야 함에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고용을 하지 않거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성장을 꺼리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³⁾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는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소

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3) <관련 보고서>

- 박충렬,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과 고려사항”,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4.8.29.
- 정은애, “소상공인 범위 기준 재검토”,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연구」 21-17, 2021.12.31.
- 길은선,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2021.2.19.

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고, 매출 규모가 유사함에도 업종에 따라 소상공인 인정 여부가 갈리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⁴⁾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의 요건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삭제할 경우 소상공인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늘리지 않거나 고용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고용을 확대한 소상공인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대상에 계속 포함될 수 있을 것임.

한편,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요건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과의 일관성, 현행법령에 반영된 업종에 따른 구분 방식 및 경기변동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액 변동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령에서 평균매출액의 범위 기준이나 산정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소상공인의 규모, 전체 기업 중 차지하는 비중 및 업

4) 상기 보고서[정은애(2021), 길은선(2021)]에서는 매출 규모가 같아도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9인이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반면, 그 외 업종은 소상공인에 서 제외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 현행법령상 소상공인 기준의 불합리성 및 형평성 문제를 지적 하고 있음.

종별 소상공인 비중 등이 정해질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크므로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부칙(경과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의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자는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소상공인 요건 개편에 따라 종전에 소상공인이었던 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개정안 시행일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소상공인 지위를 일정 기간 유지하게 할 신뢰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개정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간주된 자를 이 법 제2조제2항 본문⁵⁾에 따른 ‘소상공인 졸업 유예’ 조

5) 「소상공인기본법」

치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 제2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자의 경우에도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소상공인 지위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됨.

3.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개선 및 발전 시책 실시

개정안은 소상공인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하여 정
부가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
고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2(영세소상공인 대책) 정부는 영세소상공인(소상공인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⁶⁾ 창업 촉진 및 성

제2조(정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 인력 확보, 직무능력 향상, 판로 확보, 디지털화, 사업장 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의 실시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⁷⁾

개정안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에 대하여 그 경영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한다면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정책 수단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6)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능력 향상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판로의 확보)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디지털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혁신의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화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의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업종별 지원) 정부는 산업의 구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구조고도화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은 ‘영세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일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자⁸⁾ 등을 “영세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 등으로 구분⁹⁾하여 특별히 지원하고 있음.

8)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 ⑥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 9) 2025년에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예산 2,037억원)의 경우 “전 업종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의 경우 “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자부담을 낮춰주고 있음.

그리고 영세한 정책 대상에 대한 지원 입법례로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¹⁰⁾,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¹¹⁾,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한 의무거출금 납부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¹²⁾, 영세 도선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유선

1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7조의5(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2)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및 도선 사업법」¹³⁾,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¹⁴⁾,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¹⁵⁾ 등이 있음.

한편,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의 연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체 수(4,124,202개) 중 ‘5천만원 미만’ 1,426,974개(34.6%),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37,213개(20.3%),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713,487개(17.3%), ‘2억원 이상’ 1,146,528개(27.8%)로 나타나고 있는바,¹⁶⁾

소상공인의 매출액 및 자산 분포 분석, ‘영세소상공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도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크므로 영세 소상공인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현재도 사업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 요건을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임.

1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행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6) 중소기업부·통계청,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2024.8., p.48

참고로,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¹⁷⁾ 및 ‘영세소상공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로 하여금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¹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65

1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377호)

1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424호)

【참고자료】

1	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 및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기준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소기업	소상공인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소기업	소상공인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